시·군·구 별 문의처

서울특별시 (25)

번호	지자체명	부서명	전화번호
1	종로구	환경과	02-2148-2444
2	중구	환경과	02-3396-5605
3	용산구	맑은환경과	02-2199-7672
4	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5490
5	광진구	환경과	02-450-7806
6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40
7	중랑구	맑은환경과	02-2094-2422
8	성북구	환경과	02-2241-3004
9	강북구	환경과	02-901-6745
10	도봉구	환경정책과	02-2091-3246
11	노원구	녹색환경과	02-2116-3197
12	은평구	자원순환과	02-351-7564
13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02-330-8497
14	마포구	맑은환경과	02-3153-8393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02-2620-4854
16	강서구	녹색환경과	02-2600-4008
17	구로구	환경과	02-860-2882
18	금천구	환경과	02-2627-1514
19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66
20	동작구	환경과	02-820-9850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75
22	서초구	기후환경과	02-2155-6757
23	강남구	환경과	02-3423-6230
24	송파구	환경과	02-2147-3282
25	강동구	기후환경과	02-3425-5925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택 및 창고·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합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 내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지원 범위 및 금액

- **주택 철거·처리**
  - 취약계층 :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소규모 창고·축사 철거·처리**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지원(소규모 우선)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범위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철거·지붕개량)를 통해 공사비 지원

궁금한것 물어보세요

Q. 슬레이트는 왜 철거·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노후화에 따른 석면먼지 비산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철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해드립니다

Q. 지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서식·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연락처 뒷면 참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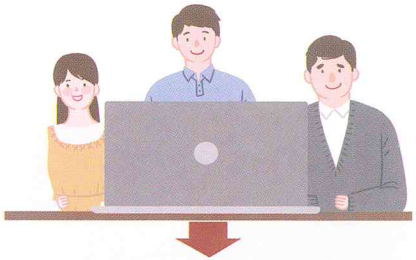
슬레이트 거주자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대상자 선정

시·군·구



지원대상자 통보

시·군·구 → 건축물 소유자



면적조사

담당 공무원(위탁기관), 공사업자(지자체가 선정)가 방문



철거 일정 협의

공사업자 → 건축물 소유자



슬레이트 철거

공사업자

